

# 古文書 用語解説試案(完)

金 光 永  
서울대 文理대 圖書館

■ <註> 古文書는 그 의미가 대체로 文字로서 표현되어 있는 것이요, 동시에 이를 發給한 與者 아울러 이를 받을 對象인 受者, 즉 人格과 對象사이에 어떤 作用을 미치는 要件이 구비되어 있는 緊要경장 이전의 문서를 지칭한다. 古文書는 史學研究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史料, 내지는 법률적인 의미에서 價値가 높기 評價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 고문서의 분포상황을 보면 대체로 서울대학교 부속도서관에 60,000枚, 국립중앙도서관에 13,000枚, 연세대학교 도서관에 15,000枚,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10,000枚, 영남대학교 도서관에 5,000枚, 장서각에 件記 1,000點이 수장되어 있다. 이러한 고문서의 충분한 연구가 수반되어 활용하여야 함은 勿論이다.

그러나 귀중한 史料로서의 古文書에 대한 整理가 아직도 이루어 지고 있지 못하다. 더욱이 도서관에 있어서 古文書의 分類表, 내지는 記述目錄法에 관한 기준조차도 설정되어 있지 못하다. 우리 나라 도서관에 있어서 古文書의 整理, 말하자면 分類, 目錄을 위한 선행과정으로서 古文書의 用語에 대한 간략한 解説을 소개코자 하는 것이다. (完)

## 人

(璫源)單子: 國內 宮家の 私文書로서, 王家 및 一族의 系譜에 올리기 위하여 申告하는 單子다.

宣諭: 勅諭이다.

省記: 國內 官文書로서, 王←臣 兵曹 公文書인데, 兵曹의 入直 堂上官이 每日 初昏에 宮掖을 宿衛하는 巡察人과 上番人의 姓名을 軍號와 함께 承政院을 經由하여 密封 上申하는 文書이다.

成文券: 契約書を 만드는 것이다.

小錄: 간단히 要點만 적은 종이 쪽지이다.

訴狀: 1) 官廳에 對하여 하소연하는 서면이다.

2) 訴訟을 제기하기 爲하여 法院에 提出하는 文書이다.

所志: 民對官 刑典 文書로서, 訴狀의 吏讀이다.

疏劄: 上疏와 劄子이다.

贖良文記: 1) 종을 풀어 주어서 良民이 되게 함. 贖身

2) 贖罪

3) 남의 患難을 대신하여 받을

頌德文: 공덕을 칭송하여 지은 글이다.

松楸文記: 산소에 심는 나무의 총칭에 대한 記錄이다.

手記: 借用文券·債證·手標·標: 國內 私對私 文書로서, 借用 證書이다.

手記: 체면을 손수 적음.

手本: 공사에 관하여 自筆로 上官에 게 보내는 書類이다.

收稅: 1) 稅錢을 거둠.

2) 租稅를 징수함.

手標: 貸借, 寄託 등을 할 때에 주고 받는 증서이다.

承政院 啓辭: 論題에 關한 文書이다.

試券(試紙): 國內 王←官←民, 私文書로서, 大·小·製述科의 試紙인데 副文書로 秘封이 있다. 應試準備 文書로 「照訖帖」과 號牌(符)가 있다. 四祖 「單子」가 必要한 경우도 있고 「初試思賜帖」이 必要한 경우도 있다. 試券으로서 官印이 찍히지 아니한 것은 「白文」이라고 한다. 式年 文科 殿試에서는 미리 試紙에 「科擧之寶」를 안하고, 試生에게 頒給한다.

柴場文記: ыл 나무를 사고 파는 市場(柴場)에 關한 文書이다.

詩軸: 詩를 적은 두루마리이다.

諡册: 國內 國王文書로서, 故王·妃←王 公文書인데, 昇遐한 國王·妃에 尊號, 廟號를 올리는 玉册이다.

諡號·贈諡(敎旨): 國內 國王文書로서, 王←民 文書. 奉常寺 文書인데, 宗親·文武官 正二品以上인 者, 儒學으로 賢名이 있는 者, 節義에 죽은 者에게 (正二品이 아니더라도) 死後 諡號를 주는 文書이다. 奉常寺에서 主管하였다.

信任狀: 外國의 元首나, 外務長官이 接受國에 對하여 特定한 人을 外交使節로 派遣하는 權지를 奉告하는 公文書이다.

## ○

哀册(文): 國內 國王文書로서, 國王이 昇遐한 上王이나, 王妃에게 내리는 册寶文이다.

量案: 논, 말의 所在, 位置, 等級, 形狀, 面積, 血標, 所有主를 記錄한 册으로서, 田籍이라고도 한다.

魚驗·魚音(어음): 出次票로서, 國內 准公文書인데, 商人 社會에서 發行者가

金錢의 出給을 約束하는 手標證書이다. 出次票는 金錢 및 寄託物의 引渡證書이다.

歷辭記: 守令이 赴任하기 前에 各 官衙에 돌아다니며 人事하던 일을 記錄한 것이다.

筵說: 筵席에서 일금의 答問에 答하여 올리는 말이다.

廉探記: 남모르게 사정을 살피 調査함.

禮物記: 典禮와, 文物에 對한 記錄이다.

玉册: 國內 國王 文書로서, 王妃를 册封하는 文書인데, 爵牒·敎旨에 해당 하는 文書이지만, 그 材料로서 玉册이라 한다. →諡册.

玉册文: 帝王 後妃의 尊號를 올릴 때에 頌德文을 새긴 간책이다.

完文: 國內 官文書로서, 准公文書인데, 이 完文은 民이 官의 立證를 받는 경우와, 官이 一方의 으로 내리는 完文이 있으나, 상당히 廣範圍하게 發給되는 公文書이다. 個人, 또는 結社의 權利義務에 關하여 發給되는 證明文書이다.

願文: 佛家文書로서, 私對佛 文書인데, 부처에 祈禱하는 文書이다. 이 文書가 檀越 쪽에서 寺刹이나, 佛經이나, 佛像들을 建造·印行·塑造할 때에 바치는 것이다.

遺誥·遺教: 國內 國王 文書로서, 先王의 遺書, 現王이 昇遐하면 遺教와 大寶를 王世子에게 傳하고, 뒤에 이를 「奉說堂」에 奉安한다. 또한 大臣에게 내리는 수도 있다. →願命.

諭書: 國內 國王文書로서, 國王對官 公文書인데, 觀察使·節度使·防禦使 등이 赴任할 때 내리는 命命書인데, 寶는

「諭書之寶」이다.

(遺書)成給文書: 國內 官家文書로서, 私對私 文書이고, 遺書인데, 分符을 死後에 할 境遇 이를 遺書라고 한다.

遺書: 遺言하는 文書이다.

諭旨: 임금의 臣下에게 내리는 글이다.

由狀反貼: 國內 官對官 副文書로서, 戶曹 文書인데, 守令의 解由狀은 戶曹로 부터 本道에 보이며 調査하도록 하고 本道에서 調査가 끝난 結果를 添付하여 戶曹에 返還한다. 이것이 由狀反貼이다.

宥旨: 國內 國王 文書로서, 王→民 文書인데, 國喪이 있을 때 國王이 내리는 赦令이다. 大赦, 刑曹나, 義禁府, 觀察使들이 等級을 나누어 錄啓하여 差等을 두어 赦令이 내려진다. ←頒赦文.

諭旨: 임금이 臣下에게 내리는 글이다.

(六行)單子: 國內 王←民 私文書로서 進士·生員, 文武科 及第者가 肅拜하기 위하여 바치는 六行으로된 名啣이다.

○(處女)單子: 王←民 私文書로서, 揀擇令이 나왔을 때 土族의 處子의 이름을 써서 올리는 單子이다.

諭旨: 國內 國王 文書로서, 王→民 文書인데, 國王이 臣民에게 내리는 訓諭의 文書이다. 「諭旨」·「諭綬」·「詔勅」이라고도 하고, 「(勳農)諭音」·「(斥邪)諭音」등 많은 諭音이 있다. 보통 冊子로 成册에서 廣布하는 境遇가 많다.

議送: 百姓이 고을 원에게 敗訴를 당하고, 다시 觀察使에 上訴하던 일이다.

移: 國內 官公文書로서, 官←官 公文書이고, 官 共通文書인데, 官衙 사이에 照會하는 文書이다. 文書上 의식되는 것이 있으면 그 事由를 갖추어 當該官衙에 移文한다. 行移, 移文, 移牒 등의 用語가 있다. ←關.

移文: 官衙 사이에 照會하는 文書이다. 文書上 의식되는 것이 있으면 그 事由를 갖추어 當該官衙에 移文한다.

吏文: 中國과 授受하던 物殊한 官用公文이다.

吏批: 吏曹에서 奏請하여 允許를 얻은 批書이다.

人身賣買文記: 사람을 팔고 사는 文記이다.

(立法)出依牒: 法令의 施行과, 判定에 관한 牒式이다.

立案(旨): 國內 官副文書로서, 官 共通文書인데, 田地, 家畜, 牛馬, 奴婢의 賣買, 및 訴訟에 대하여 官에서 發給하는 證明書이다.

立案: 地方行政官廳으로부터 發한 證明의 一種으로서, 民의 請求에 관한 事實에 대해 發給한 文書이다.

立案: 完議: 國內 准公文書로서, 決定書이다.

ㄱ

咨文, 入朝文書: 外交文書로서, 對中

國文書인데, 中國의 禮部에 올리는 文書이다. 「表」, 「箋」, 「物狀」을 합하여 咨文이라 한다. 종이는 咨文紙를 사용하고, 咨文은 吏文으로 作成되는 表箋文의 通稱이고, 이 下部構造로서 위의 表·箋·物狀외에 請表·謝恩表등 많은 文書가 있고, 國王 逝去를 알리는 咨文은 訃告表·謹告終箋·請諡奏本이 있다

慈旨: 大王大妃의 傳旨인데, 이 境遇 慈教라고도 하고, 臣下에게 내려지는 경우 한글을 使用하였다.

懿旨: 王世孫의 傳旨이다.

爵帖: 外命婦에게 주는 告身이다.

狀: 唐六典에는 이를 六朝時代에 있어서 奏에 該當하였지만, 文心雕龍에는 「萬民達志 則有狀列辭諫」이라 하였다.

狀啓: 國內 上奏 文書로서, 王←臣 公文書인데, 監司나, 또는 王命으로 地方에 내려간 官員이 書面으로 報告하는 文書이다. ←草記.

掌記: 物件이나, 논밭 등의 賣買에 관한 物目을 적은 冊말이다.

帳籍: 戶籍이다.

摘奸成冊: 不正이 없나, 일어나를 캐어 살펴 記錄한 冊이다.

傳教: 王의 命令이다.

典當文記: 物目을 擔保로하여 돈을 꾸어 주고 받고한 文書이다.

傳令: 國內 官 公文書로서, 洞衙文書인데, 守令이 赴任하기 前에 本邑 公民에게 내리는 命令이다.

傳令狀: 國內 結社 准公文書로서, 各結社(負祿·賤人)에서 司有가 結司員에게 命令을 傳하는 文書이다. ←通文.

箋文: 外交文書로서, 對中國 文書인데, 中國의 皇太后, 皇后, 皇太子에게 賀禮하는 文書이다. 寶는 「大寶」를 사용한다.

傳旨: 國內 國王 文書로서, 王→官 文書이고, 承政院 文書인데, 國政에 대하여 承政院을 通하여 내리는 國王의 命令書이다. 그 條項은 「銀臺條例」刑赦傳旨條에 明示되어 있다.

○直赴傳旨: 各道의 都試 節目과 第者는 바로 會試·殿試에 應試할 資格이 있다는 啓下 傳旨인데, 이에 따라 直赴板帖文을 給與한다.

節目: 國內 官文書로서, 准公文書인데, 完文과 같은 性格이나, 條件으로 表示된 文書이다. 말하자면 條目 한개씩 記錄한 것이다.

(定名)單子: 國內 國王 文書로서, 國王→王妃인데, 王妃 冊禮에 이름을 定하는 單子이다.

題目: 國內 官文書로서, 官←官 公文書인데, 官吏의 褒貶을 四字二句로 된 文句로 記錄한 文書이다.

祭文: 國內 神儒家 文書로서, 私對神 文書인데, 國王이나, 個人이 自然人으로서, 巫祝이나, 儒家 告祀에 올리는 글이다. 國王의 行祭文으로부터 官員·私家의 祭文에 이르기까지 多樣하다. 祝文이 規式的인데 比하여, 祭文은 死者

의 一生을 略述하고, 追慕의 情을 담은 것이다. 嶺南一帶에는 한글로 祭文을 지어 祝文을 읽은 뒤에 卑親 女子가 읽고 이를 女系로 傳承하여 왔다.

題音·拷音(제김)·題辭: 官對民 共通副文書로서, 訴志의 餘白에 守令이 내리는 判決文인데, 觀察使의 判決은 題辭라고 한다.

朝報: 1) 承政院에서 처리한 일을 날마다 아침에 적어서 반포하는 일, 또는 그 적은 종이로서, 朝報라고도 한다.

2) 消息을 傳하여 通知함.

照覆: 照會에 對한 會談이다.

詔書: 國內 高麗·李朝末 國王 文書로서, 天子曰詔라 하여, 皇帝의 敕書이다. 高麗時代 中期와, 大韓帝國에의 敕書를 詔書라 하였다.

條約文·條約(約章): 外交 文書로서, 開港지기 및 韓日合邦을 전후해서 여러 條約, 約章이 있고, 또 外國과 사이에 오고간 外交 文書들이 있다.

(照律時 功議)單子: 國內 私文書로서 照律할 때 功臣의 後裔들이 바치는 單子이다.

照會: 移文을 지칭한다.

照訖帖: 國內 准公文書로서, 1) 科擧 보기전에 成均館에서 行하는 照訖語에 合格한 사람에 주된 證書이다. 이것이 있는 사람만이 科擧를 볼 資格이 있었다.

2) 科擧에 應試하는 儒生에게 成均館에서 그의 戶籍과 對照한 뒤에 小學을 背誦한 것을 照訖이라 하고, 여기에 合格한 者에게 照訖帖을 出給한다.

3) 貢物 牒文에 대하여 照訖帖을 發給한다.

奏: 文心雕龍에 「首唐虞之臣敷奏以言 秦漢之輔上書稱奏: 秦始立奏, 自漢以來, 奏事或稱疏, 奏事之末 或云漢啓 自普來 盛啓用典表奏」라고 하였고, 그 내용은 天子에게 올리는 上奏 文書이나, 우리나라에서는 一般의인 面에서 使用하였다.

竹冊: 國內 國王 文書로서, 王→世子·嬪 文書인데, 世子·世子嬪의 冊封 文書이다.

中國箋文: 吉凶의 일이 있을 때에 임금에게 아뢰던 四六體文이다.

證明: 이는 帖文, 標文을 지칭한다.

呈辭(狀): 國內 私文書로서, (王←官, 官←官) 私文書인데, 官員이 事頗로 말미암아 辭職·休職·休暇 등을 願하여 올리는 單子(願書)이다. 다음과 같은 種類가 있다. 「辭職」, 「觀職」, 「掃墳」, 「親病」, 「焚黃」, 「針灸」, 「加土」, 「婚嫁」, 「沐浴」, 「親祭」, 「受由」 등이다.

贈諡: 二品 이상의 實職者에게 死後에 諡號를 追贈하는 것을 贈諡라 한다.

贈職教旨: 從二品 以上の 敕書의 付친, 祖父, 曾祖父나, 또는 忠臣孝子, 및 學行이 높은 사람에게 죽은 뒤에 官職과 品階를 추증함.

指令: 이는 甘結을 지칭 하고, 지휘,

命令 願書, 또는 품위에 對하여 내리는 官廳의 通知이다.

遲晚: 國內 民對官 私文書로서, 刑典 私文書인데, 罪人의 自由, 및 自白書이다. 推絀하여 三度 抗拒한 다음에 職牒을 回收하고, 다시 推考할 때 받는 自白書이다. 親鞫할 때는 國王이 對象이 되겠으나, 一般的으로 다루어 刑曹文書에 속한다.

知音: 1) 音樂의 曲調를 잘 압.  
2) 세와 貞승의 소리를 분간하여 알 아 들음.

陳書狀: 國內 私文書로서, 戶典文書인데, 田地를 3年以上 耕作하지 않고, 荒廢시킨 경우 他人이 官에 告하여 耕作權을 얻는 文書이다.

陳試狀: 國內 對官 私文書, 禮典文書로서, 初試에 及第하고, 會試·覆試에 合格되지 아니하였을 때에 事情이 있어 다음 會試에 應試할 수 없는 者는 陳試狀을 禮曹에 바쳐서 許可를 얻어 會試에 應試케 된다.

陳省: 國內 民對官文書로서, 禮典·兵典 文書이다.

1) 各 고을에서 上納하는 貢物의 明細書이다. 이 陳省에 따라 攝戶長·正朝戶長, 및 安逸戶長의 「職帖」을 授與한다.

2) 試驗을 施行할 때에 應試者가 自己의 事情을 陳述하여 願書를 地方官에게 바치면 該官은 觀察使에게 申告하고, 觀察使는 그 書類를 粘付하여 禮曹에 移牒하는 것이다.

(進獻)單子: 國內 國王文書로서, 慈殿←王 私文書인데, 王의 慈殿 誕日에 올리는 單子이다. 寶는 「施命之寶」를 安한다.

天

次對筵說: 每月에 여섯 차례씩 의정 언 석에서 임금의 자문에 答하여 올리는 말이다.

劄子: 國內 上奏 文書로서, 王←臣 文書인데, 國王에게 올리는 簡單한 形式의 上疏文을 「劄子」라고 한다.

「獨劄」: 單獨으로 하는 上奏를 말한다.

「聯劄」: 連名으로 하는 上奏를 말한다.

差帖: 國內 官·公文書로서, 官 共通文書인데, 下吏를 任命하는 辭令書이다. 禁府參下, 都事, 師傅, 教導, 教官, 監役, 別檢, 假引儀, 守直, 守奉, 守衛 등의 任命狀이다. 吏吐가 있는 것이 物色이다.

(參謁六行)單子: 官·私文書로서, 共通文書인데, 每年六月과 十二月에 官員의 成績을 考查하여 褒貶할 때에 各司의 官員이 그 首職에 面謁할 때 드리는 名劄이다. ←單子.

冊: 王이 臣下에게 命을 내리는 글이다.

尺文: (吏記) 자문으로 읽는다. 稅를

받친 領收證이다.

薦望記: 國內 官文書로서, (王←官, 官←官) 公文書인데, 官員을 叙任할 때에 文官은 吏曹에서, 武官은 兵曹에서 三人의 候補者(三望)를 奏薦하면 國王은 그 奏薦된 者들 중에서 點을 찍어 (落點) 任命할 者를 決定한다. 注擬, 備望, 三望, 擬望, 別名 ○薦狀. 벼슬아치를 官 자리로 천거하는 文書이다.

帖文: 國內 官, 公文書로서, 官 共通文書인데, 權利 行使, 및 物品供給의 證明書이고, 許可書이다.

牒: 文心雕龍의 書記 第25에 「牒者葉也·短簡編牒如在枝·溫舒截蒲其事也」라 하였는데, 六朝에 이미 이것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唐六典에 下邇上制第六을 牒이라고 하고, 九品以上の 公文을 云하였다.

牒報: 敵의 形便을 偵察하여 報告함.

牒(皇): 國內 官公文書로서, 官←官 文書인데, 同等 以上の 官衙(下邇上)에 올리는 文書이다. 牒目이라고도 한다.

牒呈: 下部官廳에서 上部官廳에 發給하는 公文이다.

靑詞: 國內 道家文書로서, 私對神 文書인데, 道家의 祭文으로서 太乙祠나, 道觀 등의 祭文이 있다.

請願書: 請願하는 內容을 적은 文書이다.

初檢文案: 初檢이라고도 하며, 獄數에 對하여 첫번으로 行하는 檢屍이다.

草記: 國內 官對官(國王) 文書로서, 京各衙門에서 政務上 重要한 일을 아뢰는 上奏文이다.

草料狀: 國內 官 公文書로서, 兵曹 文書인데, 軍官·宦官·家族을 奉養하지 않은 鎮將·平安道 博川 以西外, 威鏡道 洪原 以北의 守令, 및 그 家族과 童蒙 教官·西北歸鄉 子弟外, 貢物 押送人·濟州 子弟外, 그 貢物押送人에게 주는 給與 證書이다.

招辭: 이는 供辭를 지칭하고, 罪人의 犯罪事實을 陳述하는 말이며, 供招이다.

草狀: 官員이 公務로 地方에 旅行할 때에 지나가는 길의 各 驛站에 車馬, 食料 등의 供給을 命令하는 文書이다.

2) 草料이다.

招牌: 國內 命官 公文書로서, 共通文書인데, 王命으로 臣下를 招致할 때에 承政院에 招牌(符信)라는 木牌에 招致되는 사람의 姓名과, 官職을 記入하여 傳達한다. 招牌는 信牌이지만, 姓名 官職을 記入하면 文書가 된다. 諸科 節日 製에 大提學을 부를 때에 牌招를 사용한다.

推案: 國內 官文書로서, 刑曹 文書인데, 犯人의 鞫問書이다.

追贈(教旨): 國內 國王文書로서, 國王←臣 文書인데, 高官, 또는 高官의 父母, 祖, 曾祖考에게 階·職을 死後에 내리는 文書이다.

推絀(上狀): 國內 官·公文書로서, 刑曹 文書인데, 官吏로서 輕微한 罪로 囚

禁되지 않는 者에게 公緘으로 推問하여 (發)答(緘答)하는 文書이다. 이를 「公緘」이라 한다.

祝文: 私文書로서, 私對 神文書인데, 儒家에서 神主(位)에게 告하는 글이다. 國家의 香祝文으로부터 個人의 忌祭祀의 祝文까지 相當히 많으나, 끝나면 洗草·燒紙하고 만다. 李朝에서는 祝板으로 代行한 적도 있었다.

勅令: 이는 勅命을 지칭 한다.

勅命: 임금의 命令, 勅令, 勅旨이다.

勅諭: 이는 教諭를 지칭 한다.

勅諭: 임금의 宣諭, 勅教, 勅語이다.

(親祭)祭文: 國內 國王 文書로서, 國王이 大祀·中祀·小祀 등에 올리는 祭文으로, 大提學을 牌招製進시킨다. 官內 文書는 대개 符信을 使用하였다.

三

頌稟: 王←臣 公文書로서, 次對 때 出席치 못할 경우에 그 理由를 알리는 文書이다. 公의인 경우를 「視事頌稟」이라고 하여, 各 官司마다 規定된 月日이 定해져 있다.

土地文記: 田番에 關한 文記이다.

通文: 國內 准公·私文書, 結社·私對私文書로서, 通知하는 文書이다. 宗中 通文·書院 通文·儒生 通文·負祿商 通文·廣大有司 등 多人數에게 通知하는 文書이다. 敍文 등도 通文이라 할 수 있으며, 通文에는 通文別單(草)를 粘連하는 수도 있다. 通文은 初帖에 「通文」이라 쓰고, 再帖에 「右文爲通諭事于云」으로 쓰기 시작하고, 末帖에 年月日을 쓰고 署名 草押한다.

○사발 通文: 國內 准公 私文書로서, 通文의 一種으로 逆賊謀議나, 下賤 賤人社會에서 官命에 抗拒하는 謀議를 가질 때, 通文을 내되 首謀 與否, 및 著名 草押 順序를 뒤섞기 위하여 通文·榜文 餘白에 沙鉢을 놓고 圓形으로 著名한 通文이다.

通牒: 이는 關을 지칭한다.

四

派房記: 해 마다 한번씩 各 地方官衙에서 六房의 下吏들을 交迭하던 일이다.

牌旨(비자)(明文): 1) 國內 私對私 文書로서, 土地·家舍 買賣를 할 때에 그 地主가 文券으로 放賣의 확실한 意思를 밝힌 文書이다. 官의 立案을 받은 明文에는 牌旨를 連粘해 둔다. 兩班의 경우 發給人은 奴婢名으로 代行한다. 이 牌旨는 牌子(비즈)라고 하여 吏讀이다.

2) 宮家 私文書로서, 宮家의 土地 買賣 文書로 牌旨가 있으나, 이는 私文書條 牌旨에 넣어서 考察하더라도 大過없을 것이다.

表: 表着는 「下言上曰表」라 하여 王에게 바치는 文書이다.

表記: 거죽에 表示하여 記錄함.

表文: 外交文書로서, 對中國 文書인

때, 中國의 皇帝에게 賀禮하는 文書이다. 箋文과 아울러 表箋이라고 하여 吏文을 使用하였다. 聖節·正朝 表文. 賀表 外에 副文書로 方物表를 同一封으로 하여 붙였다. 東國李相國集, 「上大金皇帝表」 중에는 「起居表」, 「表」, 「物狀」 등이 있다. 寶는 「大寶」를 사용한다. 訃告의 경우에는 訃告表를 올린다.

標文·標紙·戶文(자문): 國內 富家官(戶典) 文書로서, 證明書이고, 捧上(맞자)하고 받는 官標이다.

○「收稅標文」: 각 漁船에게 本道·營門 諸富家·各 衙門에서 그 所營에 따라 發給하는 納稅 證明書이다.

標文(收稅標文): 富家에서 漁船에 發給하는 納稅 證明書이다.

表箋: 中國皇帝에게 賀禮 陳情하는 글이 表이고, 皇太后나 皇後, 皇太子에 賀禮하는 글을 箋이라고 한다.

稟告: 웃 어른이나, 또는 상사에게 여쭙는 것이다.

稟目: 上官에게 여쭙는 글이다.

風憲差帖: 官 准公文書로서, 郡衙文書인데, 守令이 내리는 風憲의 任命狀이다.

令

下帖: 國內 官對民 郡衙 公文書로서, 守令의 命令書이다.

(鄉吏)給帖: 國內 官 公文書로서, 吏曹 文書인데, 吏曹에서 每年 地方官衙의 報告에 따라 鄉吏에게 「一戶長」 등의 辭令狀(帖)을 授與한다.

解由: 官員이 交遞될 때에는 그 在任中の 財政, 또는 保管 物品의 審計를 받고 無過하면 그 責任의 免除를 받는다. 이것을 解由라 한다.

解由(書·狀): 國內 官(官 公文書로서, 戶曹 文書인데, 官吏가 交遞될 때 그가 掌理하던 物品에 缺縮이 없을 때 받는 文書이다. 副帶文書로서 「由狀反帖」이 있다.

「解由移關式」: 前官이 作成하는 文書이다.

「解由稟呈式」: 後官이 作成하는 文書이다.

解由關子: 官衙의 物品을 맡아 管理하던 벼슬아치가 갈릴 때에 後任者에게 그 事務를 引繼하고 戶曹에 報告하여 그 責任을 免하는 것이다.

解由狀: 解由하여서 아무 缺縮이 없는 경우에는 解由狀을 發給한다.

行狀: 國內 官 公文書로서, 共通文書인데, 旅行證明書(漢城府, 觀察使, 都巡問使가 行衙에게 주는 證明書.)인데, 海浪島와 北路에서 西關에 旅行하는 者에게 巡營에서 주는 證明書이다.

行下(票)古風: 國內 官·私對私 文書로서, 行下로 내리는 錢文票이다. 一名 古風이라고 한다.

鄉約: 李朝에 勸善懲惡을 취지로 한 鄉村의 自治, 規約인데, 본래 中國 宋나라 때에 呂氏鄉約을 본딴 것으로 德業相勸, 過失相規, 禮俗相交, 患難相恤의 네 綱目을 主精神으로함. 中宗 14년에 實施되었다가 곧 廢함. 이후 地方에 따라 여러가지 鄉約이 있어 왔다. 普通 各邑의 鄉校, 또는 鄉所를 中心으로 여러 邑員을 둔다.

許給文記: 許諾하여 始與함.

移標(路文): 國內 准全文書로서, 徭負商團의 그 所屬과, 自己의 證明書이다.

戶口單子: 國內 民對官 文書로서, 戶

典文書인데, 戶口를 式年마다 申告하는 單子이다.

護送帖: 1) 따라가며 지켜서 보냄.

2) 罪囚나 刑事 被告人을 監視하여 送致함. 押送이라고도 한다.

戶籍: 戶數나, 食口別로 記錄한 장부이다.

婚書: 國內 私對私 文書로서, 書狀의 하나지만, 物殊한 용도에 사용되므로 四柱單子까지 합쳐서 婚姻에 사용되는 文書를 婚書라고 할 수 있다.

婚書記: 婚書를 쓰는 文書이다.

笏記: 儀式의 順序를 적은 글이다.

紅帖: 踏印傳令: 國內 官 公文書로서, 洞衙文書인데, 守令의 傳令 下帖이다. 一名 踏印傳令이라고 한다.

紅牌(教旨): 國內 國王文書로서, 王→民 文書인데, 文·武科 甲·乙·丙科의 科擧 合格者에게 주는 證書이다. 寶는 「科學之寶」를 安하였다.

換簡·換票: 國內 准公文書로서, 오늘날의 換어음 證書이다.

還退文記: 갔던 땅, 집 등을 도로 물리는 文記이다.

會盟錄: 1) 서로 모여서 盟誓한 것을 적은 글이다.

2) 임금이 功臣들과 산 鷄송을 잡아 하늘에 제사 지내고 피를 서로 나누어 팔며 단결을 맹세하는 일을 적은 것이다.

回文: 國內 准公(結社)對私 文書로서 回覽文이며, 通文이다.

訓令: 上級官廳이 下級官廳에 對하여 法令의 解釋이나, 事務의 方針에 關하여 내리는 命令이다.

訓諭: 가르치어 타이름.

徽旨: 王太子의 傳旨이다.

# 圖協出版物案内

서울特別市 中區小公洞六  
振替 서울 三七五三  
電話 (22) 四八六四  
三五六一三

## 韓國十進分類法

(附)相關索引  
修正版

A 5版 / 七〇〇面 / (會) 三,二〇〇원 (非) 四,〇〇〇원  
分類의 目錄은 資料組織의 兩大基本作業이다. 蒐集한 資料를 保存하고 利用을 하기 위하여 보다 빠르게 檢索할 수 있도록 記號化하는 基本分類道具이다.

## 韓國參考圖書解題

韓國書誌事業會編

B 5版 / 二六〇面 / (會) 二,〇〇〇원 (非) 二,五〇〇원  
이 解題目錄은 우리나라에서 刊行한 參考圖書를 古典參考文獻으로 現代에 이르기까지 刊行時期의 言語文字에 구애되지 않고 광범하게 수록하여 現代의 研究資料로서는 물론 과거의 資料도 檢索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우리 나라에 관한 參考圖書類의 總集으로서 各學界의 研究者들에게 文獻情報을 提供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舊韓末古文書解題目錄

韓國書誌事業會編

B 5版 / 一六五面 / (會) 一,六〇〇원 (非) 二,〇〇〇원  
이 解題目錄은 一八七二~一九〇七年 사이의 外交文書五三件, 監理官文書一五九件, 海關文書一八件, 衙文書五三件, 總一,五四件에 達하는 舊韓末古文書를 整理하여 解題收錄한 것으로서 當該分野研究에 貴重한 參考文獻이다.

## 韓國圖書館學叢書

十三種  
十四卷

## 圖書館學翻譯叢書

九種  
九卷